

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

[기초·고도화 트랙]

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하고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2025년도 「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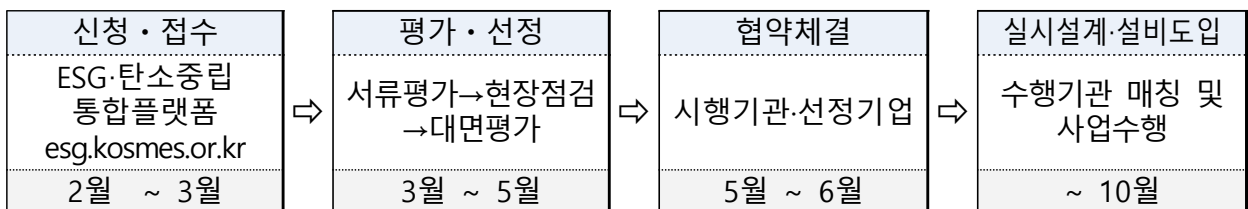
2025년 2월 18일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1.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에너지 고효율,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
- (사업기간) 공고일 ~ 2025년 10월 31일(금)까지
- 사업 추진체계

구 분	역 할
총괄기관 (중소벤처기업부)	• 사업 기본계획 수립 • 사업공고 • 예산교부
시행기관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)	• 총괄관리(기획, 운영, 관리, 정산 등) • 정책연구 • 성과분석
지원업체 (중소기업)	• 사업신청, 실시설계지원 협조, 사업비 정산 •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정개선 및 설비 도입
수행사 (실시설계지원 수행사)	• 지원업체 컨설팅·설비 도입 지원 • 지원업체 탄소감축량 실적 보고

사업 추진절차



2. 지원내용

-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(실시·설계지원),
→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
 - (실시·설계 지원)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·경영 컨설팅, 공정분석, 시장조사 등 지원
 - (설비도입 지원) 탄소배출 감축 설비 도입비용 일부 지원, 업체별 국고 보조금 상이(최대 3억원, 부가세 제외)
 - * 국고보조금 지원금액은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됨

3. 지원대상

□ 지원자격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「중소기업」
 - *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(sminfo.mss.go.kr)에서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및 필수제출
-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,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기업
 - *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(ngms.gir.go.kr)에서 등록현황 제공

-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, 탄소多배출업종*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
- * 화학제조업, 비금속제조업, 1차금속제조업, 식품제조업, 금속가공업 등 (붙임2 참조)

□ 신청 제외 대상

- ◆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
 - * 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(기업)는 참여 가능
- ◆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
- ◆ 부도 및 휴.폐업 기업
- ◆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,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- ◆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실시설계지원 수행사, 설비도입지원 수행사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
- ◆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◆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지원규모 및 조건

□ (지원예산) 9,700백만원 내외

□ 지원내용

- (실시설계지원) 감축실적보고서 · 완료보고서 · 변경사업계획서 작성지원 등 실시설계지원 수행사를 통해 10백만원 내 수행
- (설비도입지원) 업체별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까지 지원(부가세 제외)
 - 세부 지원트랙(공급망 트랙은 별도 모집 예정)

지원트랙	지원(신청)대상		규모	보조율	비고
기초	·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		75개사 내외	50% 이내	· 기초트랙, 고도화트랙 중복신청 불가 · 최근 5년간 동일 트랙 내 3회 초과 지원 불가
고도화	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기업	· '22~'24년 동 사업 완료 및 정상 진행 기업	5개사 내외	70% 이내	
		·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*을 참여하여 '중간1' 이상인 기업			
		· Net-Zero Members(기술보증기금)			

*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중 세부사업명 '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'에 해당

- (사후관리) 사업종료 후 5년간 탄소 감축실적 데이터* 및 보고서 제출
 - * 전력량계, FEMS 연동 등을 통한 데이터 제공 및 현장조사가 수반될 수 있음

5. 평가 절차

- ① 신청서제출 → ②서류심사 → ③현장점검 → ④선정심의(기업 PT)

구분	평가 항목
서류심사	· (사업계획) 사업계획 타당성, 자금조달계획 적정성, 사후관리·수행사 적성성 등
	· (사업효과) 온실가스 감축량 및 감축률, 투자금 대비 감축효과
	· (정책목적) 고탄소 배출업종 영위여부, 일자리 창출효과, 대기업·수출여부
현장점검	· (경영자) 대표자 및 사업 책임자 확인, 사업계획서 내용 인지 여부
	· (탄소저감) 실시설계지원 필요성, 설비도입지원 타당성, 공정개선 및 사후관리 가능여부 · (기업현황) 사업장 운영현황, 조직 및 고용수준, 시설수준 등 사업계획서 기재내용 점검
선정심의(PT)	· (탄소저감) 탄소저감 계획 구체성, 사업계획 실현가능성, 감축목표 적정성 등
	· (공정개선) 성과창출 계획 적정성, 도입 희망 설비 타당성, 공정개선 활동실적
	· (파급효과) 모범사례 창출 및 확산 가능성, 탄소저감 시급성, 고용창출 등 기대효과

6. 사업 신청

□ 신청 기간 : 2. 18.(화) ~ 3. 10.(월) 16:00 까지

□ 신청 방법

- (온라인 신청) ESG·탄소중립 통합플랫폼(esg.kosmes.or.kr)을 통해 신청

□ 사업설명회

-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향상을 위해 설명회 실시 예정

- (온라인 설명회) 2.20.(목) 15:00

* ESG·탄소중립 통합플랫폼(esg.kosmes.or.kr)을 통해 설명회 전일 접속URL 공지

□ 문의처

-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지원처 055-751-9771, 9849

7. 기타 안내사항

-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해 선정기업은 지원설비에 적산전력계 등 모니터링 설비를 필수로 설치해야 함

* 본 사업 지원으로 도입되는 기계설비의 모니터링 설비 구입비용은 기업 자부담

- 선정 후 실시설계 지원 단계에서 중도 포기할 경우 기업부담금 발생함

* 실시설계 진행 중 중도 포기 시 기업부담금: 60만원 / 실시설계 후 사업포기 시 기업부담금: 150만원

-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

- 입찰·계약의 전반에 관하여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야 하며, 위반 시 지원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- 협약 체결 후 4개월 이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(나라장터)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4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로 간주함
- 온실가스 감축설비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최소 30% 이상 선금 집행 필수(자부담금 30% 이상 납부 필요)
- ‘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’ 및 ‘기후공사·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사업’, ‘중진공 ESG 심층진단’ 참여기업 대상으로 공급망 트랙*을 신설하여 ‘25년 5월 중 별도 공고 예정임
- * (대상)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사업 지원기업(24년 완료기업, ‘25년 선정기업), ‘25년 기후 공사·공급망 실사대응 기반구축 사업 선정기업, ‘23-’24년 중진공 ESG 심층진단 완료기업

붙임 1

지원대상 감축설비

지 원 설 비	지 원 범 위
1. 차압터빈 시스템	차압 또는 폐압을 활용하여 전기 또는 동력을 발생하는 설비 - 스팀터빈발전, 차압구동 장치 등
2. 연료 전환	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새로운 연료로 대체하는 설비 - 보일러, 건조설비, 버너, 로 등
3. 폐기물전처리장치	전처리장치를 설치하여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설비 - 파쇄기, 선별기 등
4. 인버터	모터 회전수를 제어하여 동력을 절감하는 장치 - 고압스크류컴프레샤(인버터가 설치된 SCREW공기압축기를 활용하여 전력절감) - 저GWP 냉매를 사용하고 인버터에 의한 회전수 제어를 통해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 등
5. 인버터 제어형 공기 압축기	인버터 운전을 통해 압축공기를 생산하여 전력을 절감하는 설비
6. 고효율 기기	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- LED조명, 모터, Pump, Fan, 교반기, 변압기, 버너 등 - 마그네틱 커플링(펌프, 팬 등에 설치하여 모터의 동력절감) - IGBT 정류기(전기로 및 도금조 등의 에너지사용량 저감)
7. 에너지관리시스템	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측정 및 관리를 위한 계측기, 제어장비, 모니터링 장비 등 시스템 구축 장치
8. 공정개선	공정을 개선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설비 - 부생가스 회수 설비, 재생유 설비(폐기되는 고체 윤활유를 재사용)
9. 탄소무배출설비	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탄소무배출로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는 설비 - 신재생에너지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기 위한 설비 ▶ 신에너지 시설 : 수소보일러, 수소 정제 시설, 바이오가스 개질시설, 연료전지 등 ▶ 재생에너지 시설 : 태양에너지, 풍력, 바이오에너지 등
10. 폐열회수 이용설비	폐열을 회수하여 전기를 생산하거나 가열원 및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설비 - 건조배열, 보일러배열, 냉각열 등
11. 폐기물 열분해시설	폐플라스틱 등의 폐기물을 열분해하여 연료화(가스, 유류)하기 위한 설비
12. 탄소포집기술	온실가스를 포집·이용하는 설비
13. 기타	지원사업 신청을 통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설비

※ 지원대상 감축설비 목록 외 지원여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, 서류심사 시 운영위원회도 동시에 진행되므로, 별도 신청절차 불필요

붙임 2**탄소多배출 지원우대업종**

업종구분	산업분류코드
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외)	20***
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23***
1차 금속 제조업	24***
금속 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외)	25***
식료품 제조업	10***
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22***
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17***
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	29***
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30***
전자 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26***
전기장비제조업	28***
섬유제품 제조업(의복제외)	13***

*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업종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수의 품목을 취급할 경우는 지난 3년간 매출액 중 주요 매출 품목(산업분류코드)을 기준으로 함